

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329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7월 31일

발의자 : 오지연 의원

1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임기, 연임 및 결원 발생 시 위촉 절차를 명확히 하고, 자문위원의 기피·회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.
-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자문위원회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규칙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윤리심사자문위원의 명칭을 "자문위원"으로 정의하고,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,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함(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)
- 나. 자문위원 결원 발생 시 후임위원의 위촉 절차 및 임기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5조의2제4항)
- 다. 자문위원의 제척 규정을 정비하고,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및 자문위원의 회피의무를 신설하여 자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(안 제5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)

3. 검토의견

가. 입법 필요성

-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서,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.
-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일부 지방의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위원 연임, 결원 발생 시 후임위원 위촉, 기피·회피 절차 등이 미흡하여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심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.
- 이에 자문위원의 임기와 연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, 결원 발생 시 위촉 절차를 규정하며, 제척·기피·회피 제도를 마련하여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본 개정안

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입법 적정성

- 안 제5조의2제3항은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위촉 해제 사유를 명시하여 자문위원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됨.
- 안 제5조의2제4항은 자문위원이 결원된 경우 후임위원을 지체 없이 위촉하도록 하고, 후임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계속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5조의2제6항 및 제7항은 당사자의 기피신청권과 자문위원의 회피의무를 신설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위원이 심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윤리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됨.

다. 법적 타당성

-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, 본 개정안은 자문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자문위원의 연임 제한, 결원 발생 시 위촉 절차 및 제척·기피·회피 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윤리심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라. 결론

-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임기와 연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, 결원 발생 시 위촉 절차와 제척·기피·회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.
- 또한 자문위원회의 운영기준을 구체화하여 윤리심사의 신뢰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